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70

발의연월일 : 2026. 5. 27.

발 의 자 : 이정헌・허성무・박홍배 강준현・박선원・김병주 김우영・김 현・손명수 정태호・정혜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홈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아파트 해킹사건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설계부실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생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자

제78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을 “제7조제3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계 등) ① (생 략)	제7조(설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78조(과태료) ①----------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제3항을---------- ---------- ----------
1의2. ~ 9. (생 략)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